붙임2 대부업 실태조사 관련 Q&A

〈자주하는 질문〉

- Q) '23.7.1에 등록된 대부업자는 작성대상 인가요?
 - A) '23.7.1 이후 신규 등록된 업자는 작성대상이 아닙니다.
- Q) '23.6.30 기준으로는 등록 대부업자 명단에서 조회되지만 '23.7.1 이후에 폐업·등록취소한 업자는 작성대상 인가요?
 - A) 작성대상이 맞습니다. '23.6.30 기준으로 등록 대부업자로 조회되는 업자는 이후 폐업·등록취소 하였더라도 모두 작성대상에 해당합니다. (※ 자료 미제출시 미제출 명단에 포함시켜 제출)
- Q) '23.6.27에 서초구청에 전출신청을 해서 '23.7.3에 강남구청 으로 변경등록한 대부업자는 어디에 실태조사 보고서를 제출 해야 하나요?
 - A) '23.6.30 기준으로 서초구청에 등록된 상태이므로 서초구청에 실태조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- Q) 실태조사 보고서 서식의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?
 - A) 실태조사 보고서 서식은 총 4종으로 구분됩니다.
 - ① 자산 100억원 이상 법인용(엑셀파일)
 - ② 자산 100억원 미만 법인용(4페이지 한글파일)
 - ③ 개인용(3페이지 한글파일)
 - ④ 지점용(1페이지 한글파일)

〈자주하는 질문〉

- Q) 대부업자마다 4가지 종류 보고서를 모두 작성해야 하나요?
 - A) 아닙니다. 대부업자가 해당하는 보고서만 택일하여 작성하면 됩니다.
- Q) ○○○대부 △△지점인데, 본점이 자산 100억원 이상이면 지점도 자산 100억원 이상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나요?
 - A) 아닙니다. 지점에서는 본점 및 지점의 자산규모와 상관없이 지점용을 작성하면 됩니다.
- Q) 개인업자라 자산규모를 파악할 수 없는데, 어떤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나요?
 - A) 개인업자는 자산규모와 상관없이 개인용을 작성하면 됩니다.
- Q) ◇◇◇대부㈜, ◇◇◇대부증개㈜ 라는 상호로 대부와 대부 중개를 모두 등록한 대부업자가 있는데, 이 경우 각각 보고 서를 작성해야 하나요?
 - A) 아닙니다. 대부와 대부중개를 모두 등록하여 **2개의 등록번호**가 있는 법인이라도 동일법인인 경우 **1개의 법인으로 간주**합니다.
 - 따라서 대부와 대부중개를 모두 등록한 업자는 1개의 보고서를 작성하되, 등록내용에 '대부 및 대부중개'로 기재하면 됩니다.
- Q) 회계감사 전이라 자산이 100억원 이상이 될지, 100억원 미만이 될지 확실하지 않은데, 어떤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나요?
 - A) 회계감사 전인 대부업자의 경우, '23.6말 가결산 기준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.
 - 다만, 실태조사 보고서가 각종 대부업 통계 및 감독·검사의 기초자료로 활용됨에 따라 신뢰성 있는 가결산 재무제표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.

〈자주하는 질문〉

- Q) 자산이 100억원이 넘기는 하지만, 주유소를 운영하며 취득한 자산이 대부분이고 대부업 영업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. 이런 경우에도 자산 100억원 이상 법인용을 작성해야 하나요?
 - A) 맞습니다. 대부업 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며 취득한 자산이 100억원 이상이라도 '23.6말 기준으로 자산이 100억원 이상 이면 자산 100억원 이상 법인용을 작성해야 합니다.
- Q) 자산, 부채 등 재무 현황은 반드시 작성해야 하나요?
 - A) 재무현황은 중요 정보이므로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.

'①자산'은 '②부채 + ③자기자본'과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고, '③자기자본'과 '④납입자본금'은 다른 항목임을 주의하여야 합니다.

[참고] 부적정 입력사례: ①자산, ②부채만 기재하고 나머지 항목은 미기재, ③자기자본이 (-)로 자본잠식임에도 (+)로 기재, ③자기자본과 ④납입자본금에 동일한 금액을 기재

- Q) 대부현황 작성방법은 어떻게 되나요?
 - A) 대부현황은 대부업체가 대부이용자에게 직접 대출해 준 현황입니다. 대부잔액은 '23.6말 기준으로 상환 받을 돈의 합계액이며, 재무상태표(B/S) 상 대손충당금 차감 전 대부(대출)잔액을기재합니다.

연평균 대부금리는 대부계약기간에 상관없이 연단위로 작성하며, 대부잔액 기준으로 가중평균을 합니다.

〈자주하는 질문〉

(작성예시) 월 2%로 대출 취급

→ 연평균 대부금리는 24.00%(=2%×12월) → **24.00으로 기재**

(작성예시) A, B, C 총 3건의 대출을 보유한 대부업자 가정

대출A: '20.12말 대부잔액 200만원, 연 30% 대출B: '20.12말 대부잔액 300만원, 연 28% 대출C: '20.12말 대부잔액 500만원, 연 20%

 $= \frac{(200 \text{ 만원} \times 30\%) + (300 \text{ 만원} \times 28\%) + (500 \text{ 만원} \times 20\%)}{(200 \text{ 만원} + 300 \text{ 만원} + 500 \text{ 만원})} = 24.4\%$

→ 24.40으로 기재

※ 차입금리도 위와 같이 연간 차입금리로 기재합니다.

Q) 매입채권 현황 작성방법은 어떻게 되나요?

- A) 매입채권은 제도권 금융기관(은행, 저축은행, 캐피탈 등)이나 대부 업자 등으로부터 대출채권을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말합니다.
 - ① '23.6말(상환후 잔액)과 ② 최초 매입시(상환전 총액)의 매입 가격과 액면가격을 각각 기재합니다.

(작성예시) 액면가 150억원(거래자 150명) 채권을 10억원에 매입, 이 중 3억원 (거래자 3명 상환완료)을 회수, '23.6.30. 현재 잔여 액면가격은 147억원이고 재무제표상 매입채권 잔액은 7억원이라고 가정

- ☞ ① '23.6.30. 현재 잔액기준
 - 거래자수 : 147명(=150명-3명), 매입가격 : 7억원(='23.6.30. 현재 재무제표상 매입채권 잔액), 액면가격 : 147억원
- ☞ ② 최초 매입시 기준
 - 매입가격 : 10억원, 액면가격 : 150억원, 채권 매입률 : 6.67%(10억원 ÷ 150억원)

〈참고〉 대부업 실태조사 실시 법률적 근거

- □ 대부업자 등은 업무보고서를 반기별(기준일: 6월 30일 및 12월 31일)로 작성하여 그 기준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시·도지사 등에 제출(대부업법 §12⑨)
 - 시·도지사는 매년 대부업자 등의 **영업실태**를 **조사**하여야 하며, 그 결과를 **행안부 및 금융위에 제출**(대부업법 §16)
 - 행안부와 금융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반기별로 작성하여 **6개월** 이내에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(대부업법 시행령 §9의2)
 - ※ 대부업자가 이에 불응할 경우 6백만원 이상의 과태료 부과 가능(대부업법 시행령 별표3)

<업무보고서 미제출 및 허위제출시 과태료>

(단위: 만원)

구분	1회 위반	2회 위반	3회 위반
법인	600	1,000	2,000
개인	200	500	1,000

법 제12조(검사 등) ⑨ 대부업자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적은 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관할 시·도지사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시행령 제7조의3(대부업자 등의 보고서 제출) ① 법 제12조 제9항에 따라 대부업자 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고서를 6월 30일 및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그 기준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시·도지사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

제16조(대부업자의 실태조사 등) ① 시·도지사는 수시로 대부업자등의 영업실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매년 행정안전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다.

② 행정안전부장관과 금융위원회는 시·도지사,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장에게 대부업자등의 현황 파악과 제도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